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 입학 금지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07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 입학 불가 규정 신설	2
2. 개정안 부칙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1.

3. 회부연월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이들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함으로써 서로 분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개별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선발하는 전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육감 등이 직접적인 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분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

Ⅲ. 검토의견

1.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 입학 불가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생략)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피해학생의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7조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 것인지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동법 제4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학 조치²⁾를 받았을 경우에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안의 법문만으로는 역시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박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적정 조치를 받고 교

1)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전학

화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전학 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이 입학하기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³⁾.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폭력이 언급된 규정은 전체 68개 조항 중 제30조의8⁴⁾ 1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전무한데,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특정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동법에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⁵⁾.

게다가 동 개정안의 개정내용이 신설되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입학자격 등’으로서 ‘자격’이라 함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뜻함.

3)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형벌은 아니지만,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만 갖추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데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야 하는데,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거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 고등학교 입학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내용을 동 조항에 신설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⁶⁾.

6)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유사한 내용으로 일부개정하는 2건의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임이자의원안(제2208354호): 진학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
2. 김영배의원안(제2209661호): 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일만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에는 부칙에 시행일만 규정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부터 개정
안을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용례를 마련하여 이 법 시
행 이후에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의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 입학 불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 학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187